

2024년도 제 1차 보건신기술(NET)인증기술 신청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

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(NET)인증 신청기술 및 인증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30일

보건복지부 장관

『보건신기술(NET) 인증제도』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,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,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

1. 신청자격

-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(기업, 국공립(연), 정부출연(연), 대학 등)

2. 신청대상기술

-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험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(24년 5월 예정)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,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
 -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
 -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
- ※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(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)되었을 경우, 신청대상에서 제외

3. 신청일정 및 서류

가. 신청일정

- 접수기간 : **2024. 1. 30(화) ~ 2. 29(목) 15:00**(온라인 접수 마감)
 - 1차심사(서류·면접심사) : **2024. 3. 11(월) ~ 3. 19(화)**
 - 2차심사(현장심사) : **2024. 3. 20(수) ~ 3. 22(금)**
 - 신기술예정 기술공고 및 이의신청 : **2024. 4. 1(월) ~ 4. 30(화)**
 - 3차심사(종합심사) : **2024. 5. 7(화) ~ 5. 10(금) 중 1일**
 - 심사결과 안내(개별통보) : **2024. 5월 말**
- ※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나. 신청서류

- **2024년도 보건신기술(NET)인증 신규신청: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업로드**
온라인 신청 : <http://khidi.or.kr/technomart> (회원가입 후 신청)

구 분	서류명	서류형태
신청서식	① 보건신기술인증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② 기술설명서(별지 제2호 서식)	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
구비서류	③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공장등록증 사본 ④ 국제표준기구(ISO)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 경영체계 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상표권, 디자인 등) ⑥ 기술의 우수성 증빙 자료(경쟁기술 대비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)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⑦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(해당 시 필수제출) ⑧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(특허 출원 시 필수 제출)	사본 또는 요약설명서, 보고서 첨부
기 타	○ 보건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“기술명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·인증될 수 있음 ○ 구비서류 중 ⑧ 「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」는 「특허법」 제58조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보고서에 한함 ○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○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	

- 2024년도 보건신기술(NET)인증기간 연장 신청: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업로드
 온라인 신청 : <http://khidi.or.kr/technomart> (회원가입 후 신청)

구 분	서류명	서류형태
신청서식	①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 연장신청서(별지 제7호 서식)	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
구비서류	② 기간연장 신청사유서(자율 양식) ③ 기술의 우수성 증빙 자료(경쟁기술 대비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) ④ 보건신기술 인증 이후에 획득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(GMP, 국제표준기구(ISO) 인증 등), 제품시험성적서(해당시 필수제출) ⑤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(해당시 필수제출) ⑥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(추가 특허출원이 있을 시 필수제출)	사본 또는 요약설명서, 보고서 첨부
참고사항	○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되지 않고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해당하는 신기술(인증기간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함) “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(인증기간의 연장신청)” 참조	

다. 신청서식

- 신청서식(첨부) : 보건신기술(NET) 인증신청서(1호) 및 기술설명서(2호)
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 연장 신청서(7호)
- 신청서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증홈페이지(<http://khidi.or.kr/technomart>)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

4. 심사비용

- 심사·평가 소요비용
-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
 -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(부과세 별도)
 - 1차(서류·면접)심사 : 18만원(1차심사 확정시 납부, 개별통보)
 - 2차(현장)심사 : 18만원(2차심사 확정시 납부, 개별통보)
 - 3차(종합)심사 : 45만원(3차심사 확정시 납부, 개별통보)
- ※ 단, 2차(현장)심사는 참석심사위원 전원이 1차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동의하는 심사기술에 대해 생략할 수 있음.

5. 지원혜택

- 보건신기술(NET) 마크의 사용(적용제품에 한함)
-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(가점 부여 등)
 - (한국보건산업진흥원)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(특허전략 컨설팅, 인허가 컨설팅, 파트너링 경비 지원 등)
 - (건강보험심사평가원) 보험급여(약가, 수가, 치료재료 등) 급여가격 평가 시 우대
 - (건강보험심사평가원) 치료재료 가치평가 시 결정금액에 5% 가산
 - (금융위원회)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시 우선 추천
 - (KOTRA)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시 자격부여
- (조달청)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
 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- 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
- (국책금융기관) 기술금융 지원
 - 산업은행 등 기술보증 프로그램

6. 제출 및 문의처
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
 - (2815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
 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단 황민승 연구원
 - * 전화 : 043)713-8598, 043)713-8596
 - * 전자메일 : hms0205@khidi.or.kr, khilee17@khidi.or.kr